

檢 討 報 告

1. 提出者：瑞山市長

2. 提出日字：1998. 2. 14

3. 提案理由

-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항과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용어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4. 主要骨子

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제1항의 의거 “기타 잡수입”을 재원으로 하게 되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위반하게 될 우려가 있어 “기타”로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자체금고에 예치관리토록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령이나 지방재정

법령에 적립기금으로 국·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제정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토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 회계 공무원 ” 을 “ 회계공무원등 ” 으로 하고 “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 ” 을 “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 으로 규정함(안 제6조).

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0조제3항에 의거 “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 토록 규정함(안 제7조제1항).

5. 檢討意見

-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과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 용어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으로써,
- '97. 12월 지방자치법 제155조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로 부터 개정 권고된 사항으로 본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상위법에 대한 위반소지를 없애고 기금운용이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